

수원지방법원 2022. 7. 20 선고 2021나8393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대한민국

피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호

변 론 종 결 2022. 6. 8.

판 결 선 고 2022. 7. 20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. 7. 23. 선고 2020가단67561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
- 1)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6. 1. 4.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- 2)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. 1. 4. 접수 제3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나.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- 1)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5. 12. 3.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- 2)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5. 12. 3. 접수 제102916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[피고의 항소이유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‘원고가 B의 체납당시인 2016. 7. 31.경 또는 피고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한인 2016. 10. 31. 무렵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고 나아가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다’, ‘원고가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현황조사서의 작성만으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도 없다’, ‘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바,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’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]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이유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재욱, 판사 안좌진, 판사 이혜미

목 록

1. [토지] 안산시 단원구 E, 도로 144㎡ 중 B 소유 공유자 지분 144분의 17
2. [토지] 안산시 단원구 F, 도로 108 중 B 소유 공유자지분 108분의 26
3. [토지] 안산시 단원구 G, 임야841㎡
4. [집합건물] 경기도 시흥시H아파트 I호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철근콘크리트조 84.910㎡

(대지권의 표시)대지권 45555.4㎡ 중 45555.4분의83.378

중 B 소유 공유자 지분 2분의 1 끝.

